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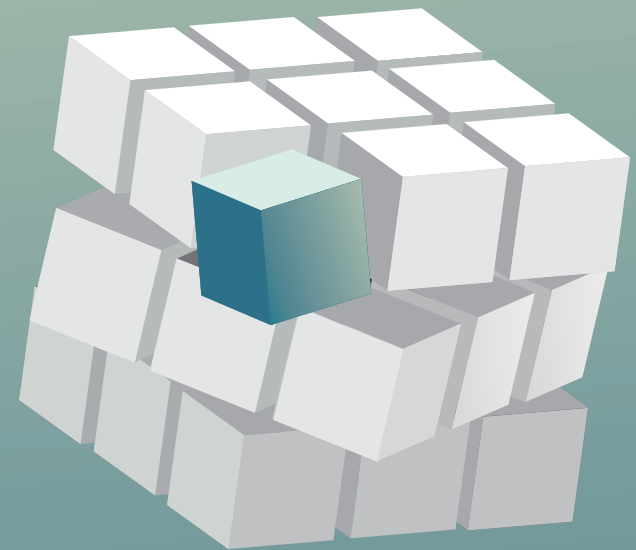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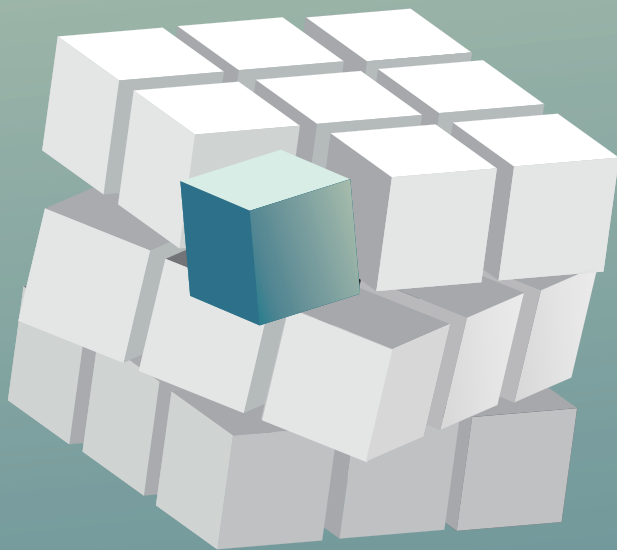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Intro

대한민국 산업은 그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전세계 앞에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루어 왔고 기업의 투자는 수출 증대, 고용 창출 등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신 각 기업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팀은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규제, 인허가, 예산 등 투자 관련 애로사항들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정부가 그동안 현장방문, 관련부처 협업, 지자체 회의 등을 거쳐 해결해온 대표적인 투자 애로 사례와 그 해결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이 겪는 투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물경제지원팀이 해결한 투자 애로사항 가운데 42건의 사례를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및 인허가, 재정·세제 등 각 분류에 맞춰 선별하였습니다. 각 사례별 문제상황과 배경, 해결 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그림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함께 제시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투자애로 해소에 좋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집은 기업의 투자 애로 관련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로 제작된 만큼 이 사례집에 기술된 내용을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인허가 및 불복 청구 등의 근거로 삼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밝힙니다.



CONTENTS

01	제도 개선	07
02	신속 행정	41
03	인프라	67
04	인허가	77
05	재정·세제	87
06	부록	101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기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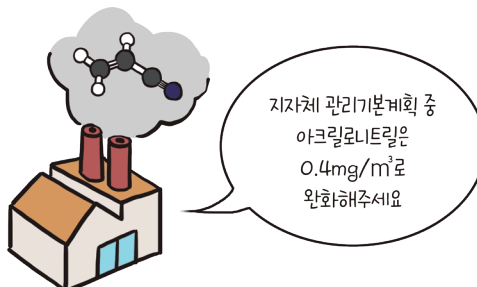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소재 제조사인 A사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20년 말 테크노 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배출업체는 입주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의 공장은 가동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아크릴로니트릴'이 배출되어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공장은 이미 '20년 말에 준공한 상황이고 2년간 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사는 산업부에 해당 지자체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 요건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정밀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배출시설 기준에 따라 ‘아크릴로니트릴’은 0.4 mg/m^3 를 적용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월 A사가 산업부에 배출시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산업부 소관과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환경 관련 법령보다 환경규제를 강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와 여러번 협의를 거쳐 2월 28일 “A사가 아크릴로니트릴 배출농도를 0.4 mg/m^3 이하로 배출되도록 시설을 보완한다면 환경청과 재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후 3월 15일 환경청 협의 후 5월 11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접수하였고 5월 23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 6월 15일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를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 6월 29일 지자체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제한업종을 변경하여 고시하면서 A사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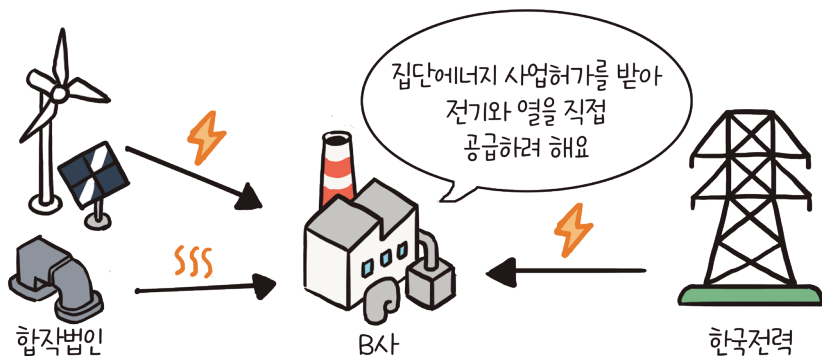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3조,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전기신사업자 등록 이후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부족분 직접 공급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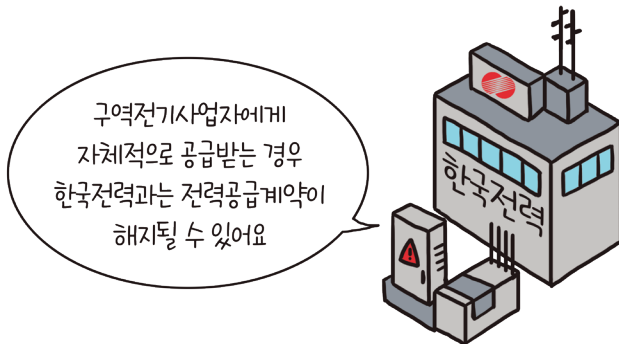
◆ 기업어로 발생 배경

- 화학회사인 B사는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 에너지로 발전설비를 전환하여 전기와 열을 직접 공급하려 합니다.
- 합작법인이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작법인이 이 과정에서 구역전기사업자로 인정되면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구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B사는 전기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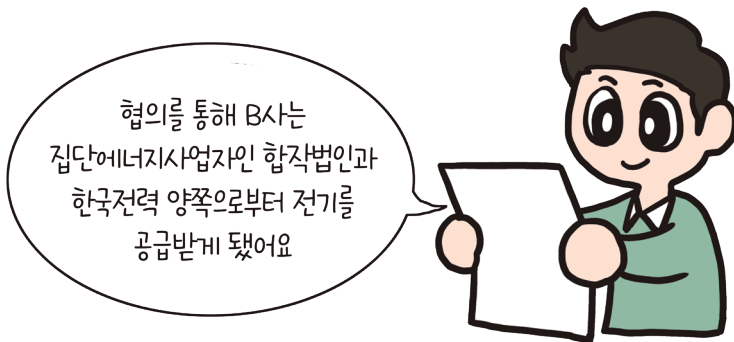
◆ 문제상황 및 이슈

- 합작법인은 B사의 전체 전력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므로 부족한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합작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자 허가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인정받아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더라도 부족한 전기는 계속 한국전력을 통해 직접 공급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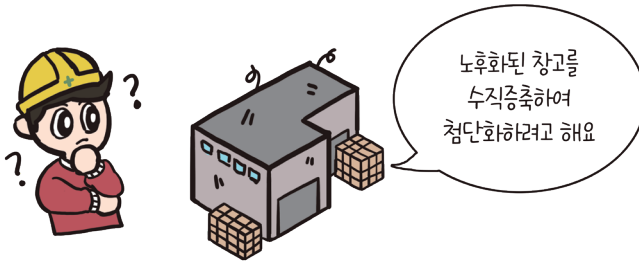
- 한국전력이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B사와 한국전력과의 전력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B사는 '23년 2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분산에너지과, B사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합작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일반 발전사업자로 분류되므로 B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합작법인과 한국전력 양쪽으로부터 전기와 열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B사에게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검토 결과와 전기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소규모 해체 공사인 경우 신고로 인허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물류회사인 C사는 노후된 물류창고의 공간을 수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장 첨단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해당 공사가 소규모 공사지만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바닥을 해체해야 하므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이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 C사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착공이 지연되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산업부에 소규모 해체 공사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만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C사는 '23년 3월 28일 통합물류협회에 처음으로 민원을 건의한 이후 30일에는 국토부에, 4월 10일에는 산업부에 애로 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5월 3일 C사에 “건의서에서 예시한 물류창고 화물이송시설(수직반송기) 설치를 위한 바닥 일부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멸실’을 목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C사는 10월 20일 새로 구축하고 있는 풀필먼트 센터를 대상으로 수직반송기 등 화물 이송장비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다른 스마트 물류센터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함을 확인



SMP 상한제 조기 종료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민간발전사업자인 D사는 세계 에너지 위기 장기화,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 에너지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22년 12월부터 시행된 긴급 정산상한가격(이하 SMP 상한제)으로 인해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수익이 급감하여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피크 시기인 여름과 겨울에 발생한 전력시장 수익으로 고정비를 보전하고 투자수익을 회수해야 하는 사업구조입니다.
- '20년 하반기 이래 지속된 금리상승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긴급 SMP 상한제로 동절기 수익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D사는 산업부에 '23년 4월부터 SMP 상한제를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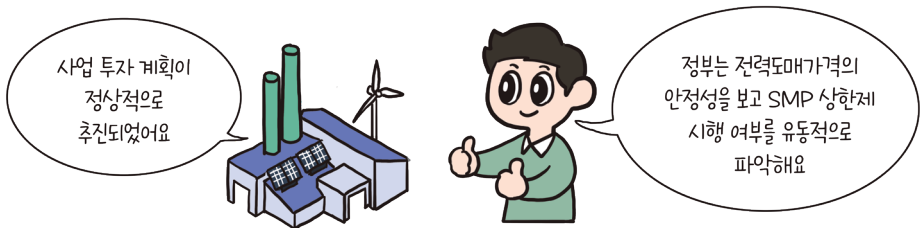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D사의 SMP 상한제 조기 종료 건의에 대해 산업부 소관과는 “22.12~’23.2월까지 총 3개월간 SMP 상한제를 시행하여 정산금 절감을 통한 요금 인상 요인 완화 효과가 있었고, 4월에도 시행조건을 충족하였을 뿐 아니라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 완화 효과도 기대되어 불가피하게 재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후 산업부에서는 SMP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었고 민간 발전사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5월에는 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23년 10월 20일 전력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D사는 SMP 상한제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사업 투자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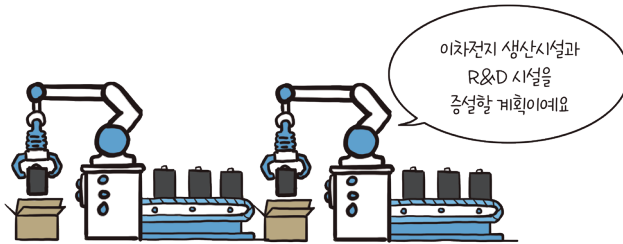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제1~6항, 부칙 제2조(유효기간)



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교육환경평가 예외 또는 준공까지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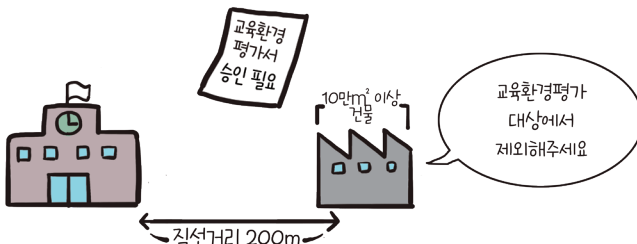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제조사인 E사는 이차전지 생산 시설과 R&D 시설을 증설하여 차세대 배터리 생산 기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 연면적 합계 10만 m^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 공장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어 납기일 준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E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가첨단전략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산업시설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시점을 최종 준공시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E사가 '23년 4월 27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이후 산업부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 시 교육환경평가를 면제해 주거나 평가 시점을 최종 준공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교육환경평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렵지만 교육환경평가 접수 이후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장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E사는 5월 17일 교육환경평가를 접수하였고, 6월 26일 교육환경위원회를 개최하고 28일 교육환경평가를 승인받아 공장 증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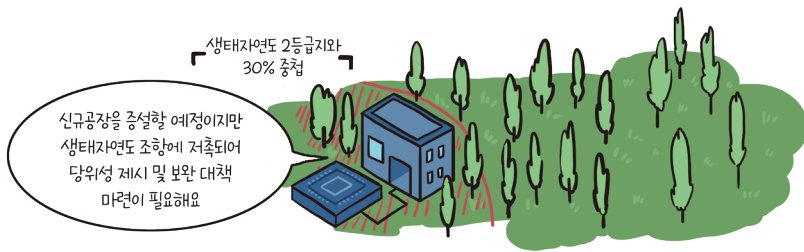


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산업입지심의회 체크리스트 중 입지기준 완화 또는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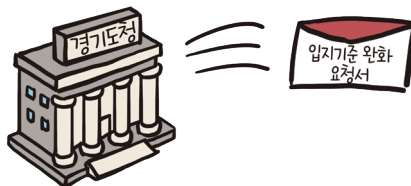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 관련 회사인 F사는 본사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하지만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대상 부지 일부가 생태자연도 조항에 저촉됨에 따라 개발 당위성 제시 및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유보시켰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F사는 '21년 11월 9일 해당 시에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22년 9월 16일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추가 공급 계획에 따라 가배정을 승인받았으나 '23년 3월 15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로부터 물량 유보를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F사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유치 의지와 국가 첨단산업 입주 등 조건에 부합한다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체크리스트 내 입지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 해주는 등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경기도 소관과와 논의한 결과 “해당 부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하지만 ① 생태자연도 2등급지 및 높은 표고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사유와 ② 경사도 15도 이상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지와 중첩되는 면적(전체 개발면적의 약 30~32% 정도 해당) 개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한다면 별도 판단하여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F사에 설명하였고, F사는 생태자연도·경사도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면적을 최대한 공원으로 보전하고 단지내 공원 녹지율을 상향하겠다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6월 29일 재신청 내용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7월 4일에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7월 14일 F사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폐수 발생 전량 위탁 처리 시 산업단지 입주 제한 해제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배터리팩 관련 회사인 G사는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G사의 배터리팩 제조 공정 중에 폐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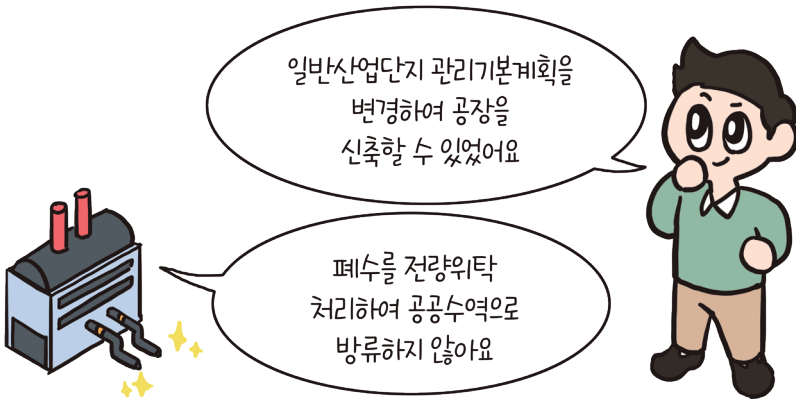
◆ 문제상황 및 이슈

- 인근 지자체 소관 일반산업단지는 폐수가 발생하더라도 전량위탁 처리하면 입주가 가능한데 G사가 입주하려 했던 지자체 관할 산업단지에서는 전량위탁 처리를 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G사는 산업부에 폐수배출량이 폐수배출시설허가(신고) 대상 미만이고 발생한 폐수를 적법한 업체에 전량위탁 처리한다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G사는 '23년 3월 10일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 공장 착공식을 진행하였지만 관할 지자체로부터 G사 공정 중에 폐수 발생 이슈로 입주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에 G사는 관할 지자체에 인근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후 8월 8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G사는 8월 18일 자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을 협의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기로 논의하였고 11월 30일 최종 변경승인 고시가 되면서 G사는 당초 계획대로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 내 수소충전기 설치 허용 법 개정 및 안전관리규정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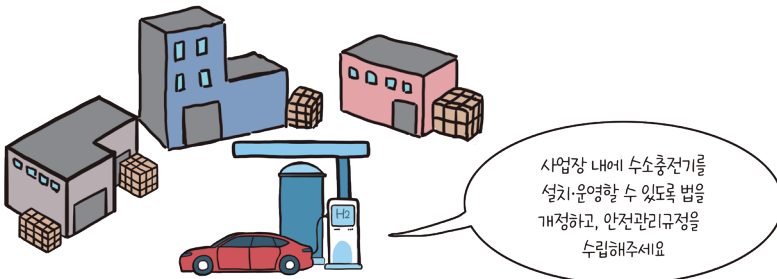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수소 관련 기업인 H사는 액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액화 플랜트와 액화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물류센터, 공장 등에서 수소 시설을 사용하려 했지만 국내 관련법상 실내 수소충전기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법규가 없고, 수소 관련법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면 물류센터나 공장 등에 실내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 이에 H사는 사업장 내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H사가 '23년 9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실제 H사의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소관과와 해당 내용을 협의하여 실내 수소충전기 설치 관련 내용을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반영하고 '25년 하반기까지 「가스기술기준코드」(지침)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上 수소 충전소에서 보호시설까지 이격거리는 제2종 보호시설 12m ~ 제1종 보호시설 17m 이상 유지 필요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1만 이하)
- 사업장 건물 실내 충전기(디스펜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없음



수소 충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수소 모빌리티 정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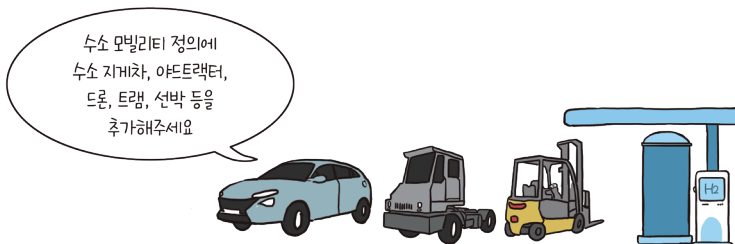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수소 관련 기업인 I사 또한 액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 플랜트와 액화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용 수소충전소는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차(승용차, 버스 및 트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지게차, 야드트랙터, 드론, 트램, 선박 등은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차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야드트랙터는 「항만법」상 시설장비에 해당되는 등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수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개정하여 수소 모빌리티 정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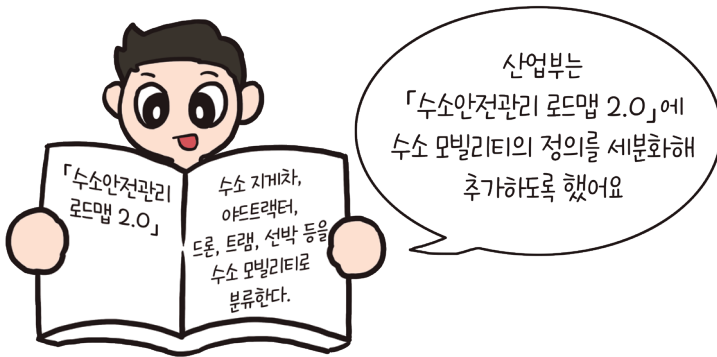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I사가 '23년 9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에 수소 지게차, 야드트랙터, 드론, 트램, 선박 등을 수소 모빌리티로 분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24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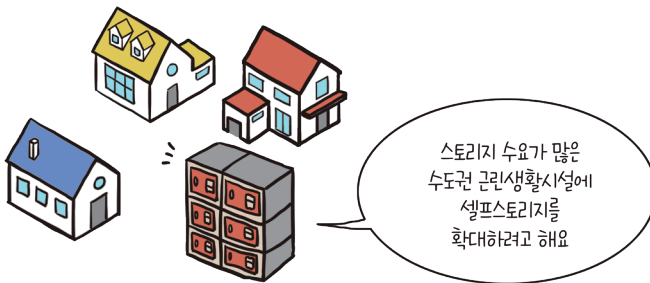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KGS코드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스토리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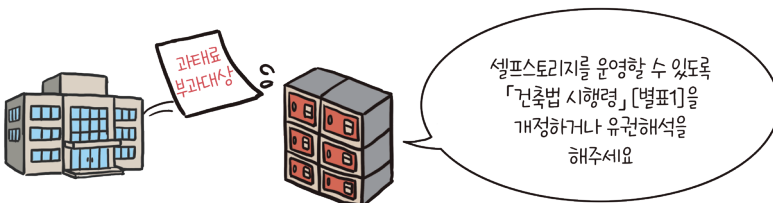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셀프스토리지 회사인 J사는 스토리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근린생활시설에 셀프스토리지를 확대하려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셀프스토리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토부 담당자는 셀프스토리지를 과거 대형 창고 개념으로 인식하여 '창고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셀프스토리지를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별로 셀프스토리지 용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 사업 확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J사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운영 가능한 시설 목록에 셀프스토리지를 추가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개정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셀프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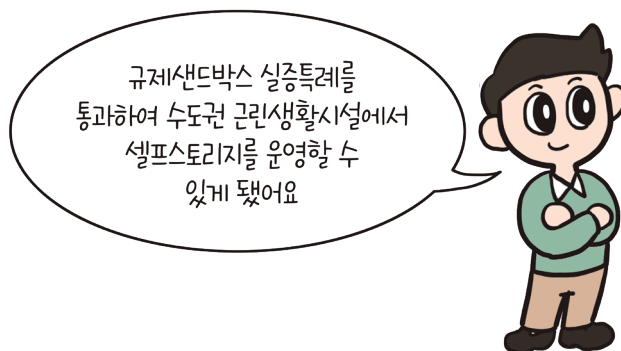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6월 J사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J사가 운영중인 셀프스토리지 사업장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사전통지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토부 건축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 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J사는 11월 6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23년 12월 산업부는 셀프스토리지는 신사업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규제샌드박스 접수를 안내하였고, J사는 '24년 1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부)를, '24년 1월 22일에는 ICT 규제샌드박스(과기부)를 신청하였습니다.
- 산업부가 '24년 1월 26일 J사 현장을 방문한 후 29일 국토부와 회의를 거쳐 주요 지자체와 현안을 논의한 결과 3월 5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팀에서 지자체에 처분 유예 공문을 발송하면서 애로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예시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생활권과 밀접한 건축물로 셀프스토리지 사업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 중
제7호(판매시설) - 보관공간의 사용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시설로 분류 가능
제14호(업무시설) - 이용자 대부분이 주거지 및 업무시설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셀프스토리지와 공유 오피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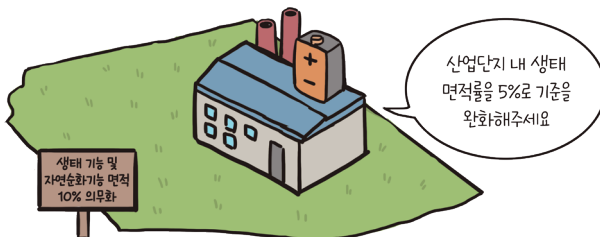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인 K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에 입주하여 1~2공장의 공장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25년부터는 3~6공장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는 의무적으로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장 6만평 부지에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하려면 6천평이 필요하며 이는 공장 1개동을 추가 증설할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합니다.
- 이에 K사는 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을 5% 완화하면 공장을 증설하고 이동경로 또한 추가로 확보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월 24일 K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K사의 산업단지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2월 5일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등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은 20% 이상이 되도록 준수하면서 산업용지 의무만 5%로 완화하는 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확정된 이후 3월 5일 새만금청이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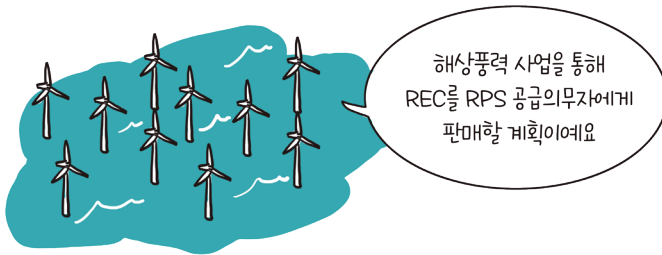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다수 사업자에게 REC 분배 허용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재생에너지 사업자인 L사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REC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REC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 RPS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문제상황 및 이슈

- 해상풍력사업을 통한 REC 판매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경쟁입찰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선정된 사업 1개당 1개의 공급의무자와만 매칭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REC 판매자가 사업 1개당 1개의 RPS 공급의무자와만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은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연 1회만 진행되어 선정되지 않으면 1년 동안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L사는 ① 입찰에 선정되면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매칭할 수 있게 해주거나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정산 기준을 가지고 RPS 공급의무자와 자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② 입찰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쟁입찰 선정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월 15일 L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23일에 L사와 투자 애로사항을 논의한 후 3월 23일 L사가 생각하는 제도개선 안을 소관과로 송부 하였습니다.
- 5월 13일 소관과에서는 ①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선정되면 해당 해상풍력 발전에 따른 REC는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매칭·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현재 공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현행 규정상 필요시 공고 횟수 조정이 가능해 연 2회 이상 정례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8월 8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한 후 9월 30일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과 REC를 다수의 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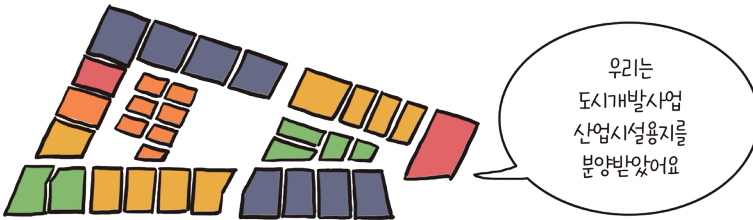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31조의 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해야하며 매4/4 분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 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공고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산업시설용지의 지구단위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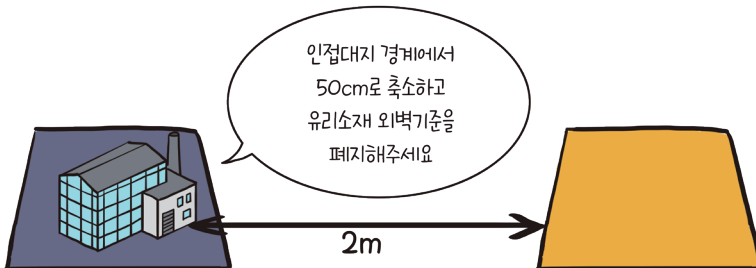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전자·정밀 제조업 등 뿌리산업 5개사는 도시개발사업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 현황 조사와 설계 검토를 마친 결과 공장이 인접대지 경계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전면도로에 접한 외벽의 2/3이상을 유리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규제로 인해 공장의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뿌리산업 5개사는 ① 공장 이격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에서 최소 기준인 50cm로 축소하고 ② 전면도로에 접한 외벽의 2/3 이상을 유리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외벽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1일 뿌리기업 5개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19일에 산업시설용지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기업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이에 산업부는 최근 개발된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비교하면 2m 이격은 과도한 규제이고, 해당 산업용지 입주기업의 특성상 유리 벽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개선을 협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30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고시를 통해 ① 공장의 이격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에서 최소 기준인 50cm로 축소하고 ② 전면도로에 접한 외벽의 2/3 이상을 유리소재로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 (건축물의 이격거리) ① 필지별 인접 대지에서 양측으로 각 2m 이상 이격시켜 건축물을 배치하여 통풍·통광 확보가 용이하도록 한다.
제14조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① 건축물 외벽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외벽의 2/3이상 유리·반사소재를 사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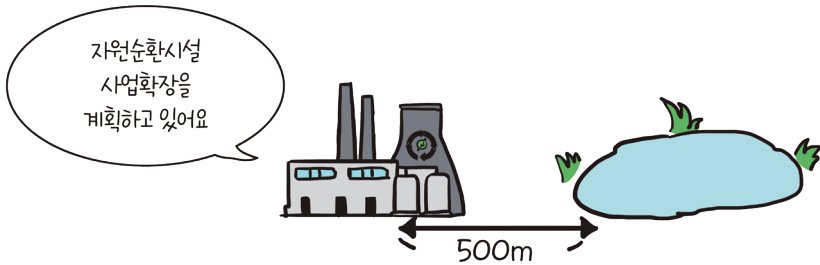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장 건축을 위한 거리 및 소재 관련
강행규정을 권장기준으로
변경했어요

자원순환시설 증설 투자 시 사업부지 확장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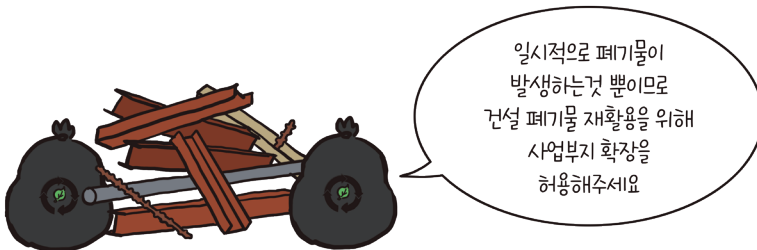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자원순환 사업자인 M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부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군은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저수지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부지 확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이에 M사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원순환시설 관련 신기술 개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확장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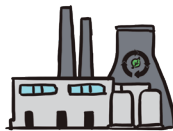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7월 1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11일 해당 지자체 및 M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군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단서조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폐목재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관련 입증 서류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산업부는 17일에 M사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군청이 허가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시 반대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 '24년 11월 18일 M사는 군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소규모 재난안전평가는 통과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면 '25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군 군계획 조례」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6조1항제3호 관련) ①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입지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폐목재 등을 처리하는 경우, 전량위탁처리 등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 인근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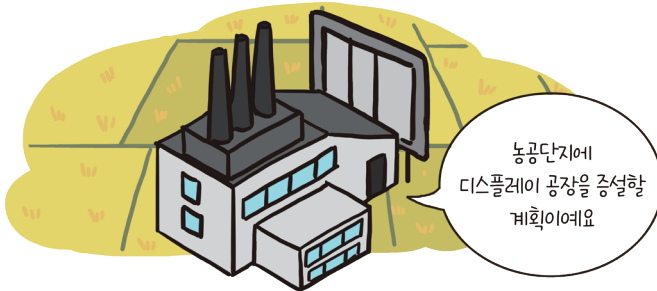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군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5년 중으로 허가를 승인받을 예정이에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량 확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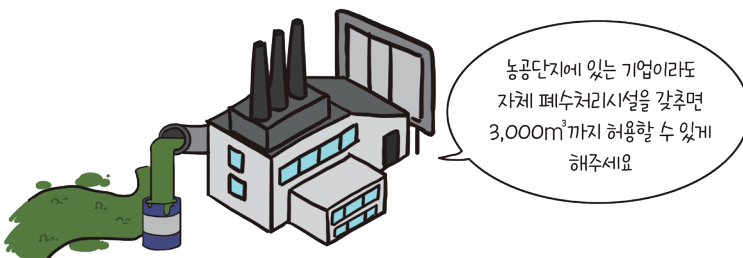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N사는 농공단지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공장을 증설하면 폐수량이 일평균 3,000m³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려 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농공단지 내에서는 일평균 2,000m³까지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어 공장 가동에 애로가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N사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라도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면 폐수배출량을 일평균 3,000m³까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7월 24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여러 차례 환경부, 관할 지자체, N사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 9월 9일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에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수배출량 제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산업부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는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가 목적이므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기업 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30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수배출량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며 환경부와 유권해석 또는 지침 개정을 지속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12월 23일 환경부에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을 공공처리시설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2,000m³ 이상 폐수를 방출하는 사업장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약속하였고, '25년 5월 8일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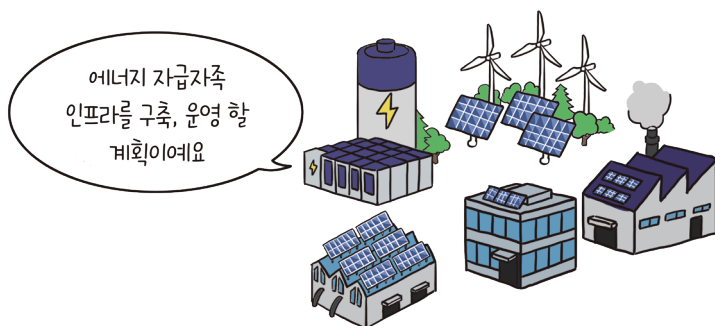
공공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준하는 수질기준으로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000m³ 이상 폐수를 방출하는 사업장 입주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어요

PPA계약 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 구현

◆ 기업애로 발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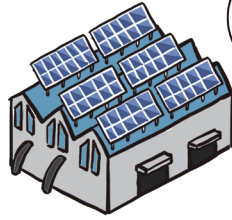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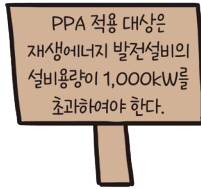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O사 외 2개사는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천 산단 노후화, 발전시설을 설치할 유휴부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단위 발전소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 현재의 직접구매계약(PPA) 방식에 따른 전력거래 또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해 거래대상 및 규모(용량)가 제한되어 중소·중견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전력을 구매할 수 없어 자급자족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PPA :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 간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



◆ 문제상황 및 이슈

- 이에 O사는 송배전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대신 유휴부지에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바로 공급받는 on-site PPA(비계통연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시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는 반드시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계통 연계인 경우
고시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세요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2월 2일 산업부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12일 O사 외 2개사와 면담을 하는 동시에 산업부 소관과에 on-site PPA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기준 적용을 제외하거나,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 소관과에서는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 발전설비용량 수준을 검토하겠으며 '25년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직접PPA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 (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은 1,000kW를 초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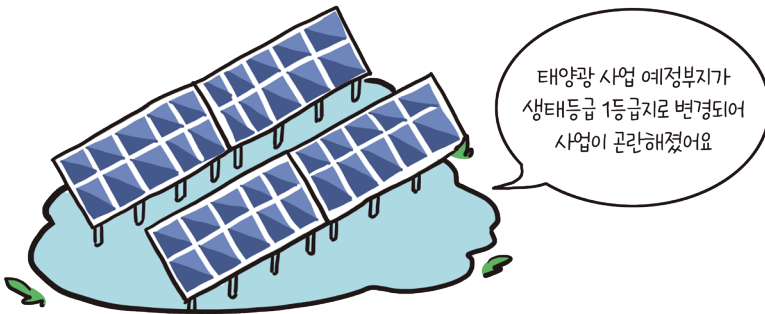
신속 행정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시 정보 공유방법 및 접근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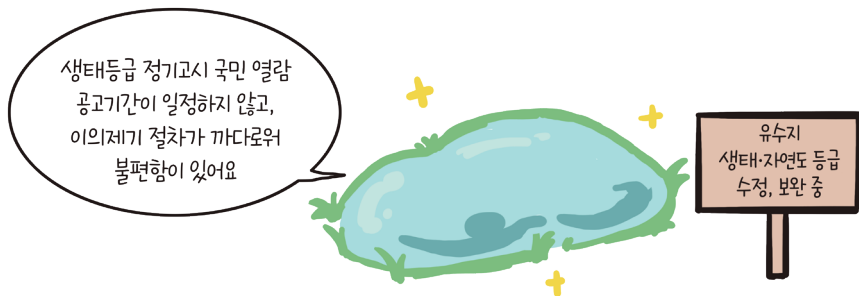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태양광사업체인 A사는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유수지에 9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하려 합니다.
- 하지만 해당 유수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수정·보완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되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생태등급 1등급지로 상향되면서 A사는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는 이러한 변동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의제기 절차도 직접 밟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① 생태등급 정기고시 국민열람공고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조차 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② 이의제기 후 반영까지 민원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정책 변경에 대한 정보 공유방법 개선 및 접근성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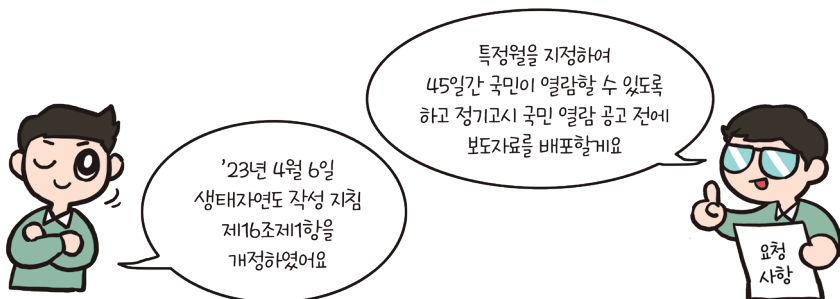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2월 9일 산업부는 A사와 관련 기업, 발전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22일 국립생태원에게 생태등급변경 국민 열람을 공고할 때 해당 기관에게도 이메일로 같이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2월 23일 국립생태원과 환경부는 산업부에 “해당 기관들에 이메일로 정책홍보를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① 특정 월을 지정하여 정기고시를 한 후 45일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정기고시 국민 열람 공고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 결과 '23년 4월 6일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국민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안을 정기고시하기 전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말일까지 공고하고, 45일간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 및 향후 일정을 공지하고 공고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축공장 진입로의 권리의무 승계 지연 대책 마련

◆ 기업애로 발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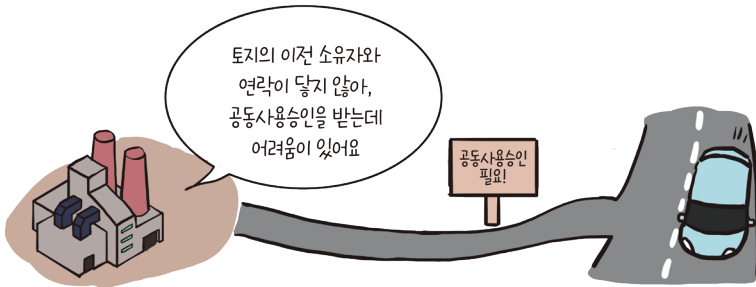
- B사는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지매입, 건축·토목설계 등을 완료하고 해당 시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B사 부지는 진입로를 포함하지 않아 진입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전 소유자가 잠적해 진입로 사용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장설립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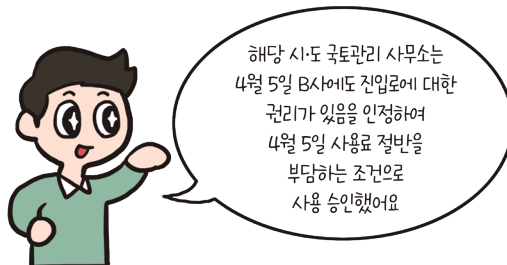
- 해당 진입로 사용에 대한 인허가기관은 시청이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시·도 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점용허가를 반대하면 시청이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습니다.
- 이에 도로안전운영과에 문의한 결과 “이전 소유자의 땅과 B사가 구입한 땅이 주소, 크기 등이 동일하지 않고, 이전 소유자가 새 주인에게 토지를 매각했다라도 진입로 B사가 구입한 땅의 진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권리의무승계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공동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B사의 건물은 「도로법」 제53조제5항 ‘이전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B사는 산업부에 진입로 사용 허가를 빨리 받을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는 '23년 1월 19일 B사의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B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시청 담당자, 시·도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2월 14일 해당 시·도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B사의 건물은 이전 소유자가 잠적하여 공동사용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B사가 내용증명을 3회 보내 공동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 후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B사는 2월 16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20일 해당 부지가 경매를 통해 새로운 토지사용권자가 결정되면서 내용증명 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용권자와 진입로 공동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토지사용권자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사용승인허가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 법원공탁절차를 진행하였고 시·도 국토관리사무소는 B사에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5월 4일 사용료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등급 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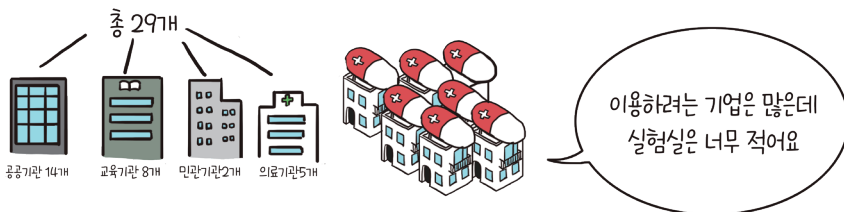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백신회사인 C사는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때는 생물안전시설 3등급(BL3) 실험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적절한 실험실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안전시설 3등급(BL3)을 운영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14개, 교육기관 8개, 민간기관 2개, 의료기관 5개로 총 29개에 불과하고 이용하려는 기업은 많기 때문입니다.
- 이에 C사는 산업부에 생물안전등급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기관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2월 6일 산업부에 C사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소관과 담당자는 “민간기업과 국내 주요 생물안전 시설을 연결하는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질병관리청에서는 “'21년부터 민간기업과 생물안전시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업이 서류를 접수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 이때 선정된 기업은 생물안전교육을 받은 이후 운영기관과 조율하여 생물안전시설 3등급(BL3)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월 7일 소관과에서는 C사에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시설 연계프로그램을 설명하였고 C사는 절차에 따라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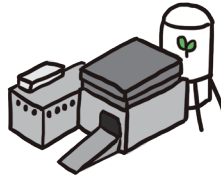


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 확대 운영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인 D사는 전량 수입되던 배지, 레진을 국산화하기 위해 배지, 레진 생산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 배지는 동물세포를 증식시키기 위한 먹이로 쓰이는 영양분을 용액이나 고형분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고, 레진은 배양된 세포의 불순물 제거와 세척에 사용되는 정제액을 말합니다. 배지, 레진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소재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배지, 레진 국산화를 위한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에요



◆ 문제상황 및 이슈

- D사는 배지, 레진 생산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이를 국산화하고자 하지만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외국산 소재·부품·장비를 선호하여 국산화하더라도 많이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국산 배지, 레진에 대한 국내·외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협의체를 확대하여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협의체"의
확대 운영을 요청합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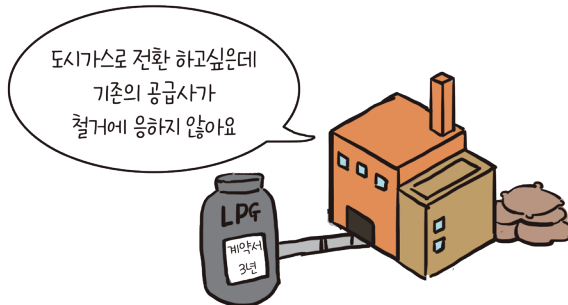
- 산업부는 '23년 2월 3일 D사의 신축 투자 프로젝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운영하는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연대협력 협의체 내용을 재검토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12월 7일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60개 핵심품목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로드맵(안)」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바이오 부자재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년부터 5년간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여 공급망 자립화율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 제품을 확대하는 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원을 통해 D사는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연료 전환을 위한 LPG 공급시설 철거 요청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조사인 E사는 '18년 11월 자사 소유의 벙커C유 보일러를 LPG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하여 LPG 공급사와 3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LPG 공급사의 요청으로 3년 8개월 동안 LPG를 사용했던 E사는 LPG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LPG 공급사에 LPG 공급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PG 공급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도시가스 전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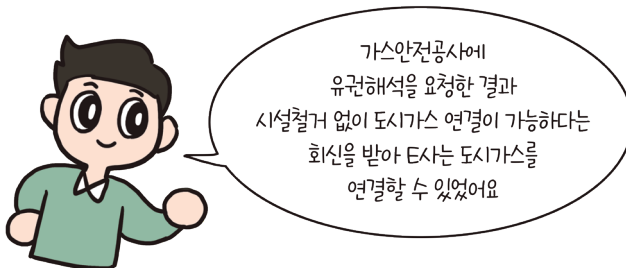
◆ 문제상황 및 이슈

- E사는 LPG 공급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3년 후 2년을 더 사용하여 총 5년 동안 거래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LPG 가스통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LPG 공급사는 “환경사업 시공사에 내는 자기부담 비용과 LPG 설비 이전비용을 E사 대신 대납한 것은 10년 정도의 중장기적 거래를 예상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철수한다면 대납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LPG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있어 E사는 LPG 공급사에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 E사는 현재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공사 요청을 받은 도시가스사 또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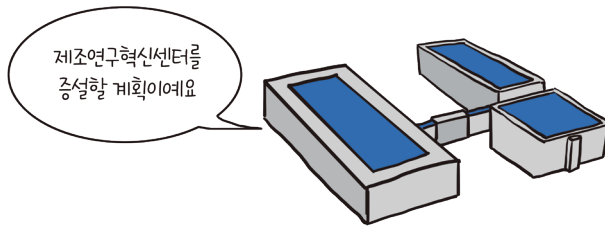
- '23년 7월 27일 산업에 해당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7월 28일 소관과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 소관과는 가스공급자가 시설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를 행정 관청이 판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가스공급자에게 동법 제71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LPG 공급사에 이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8월 30일 산업부, 소관과, E사, LPG 공급사와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LPG 시설이 필요한지 가스안전공사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기존 LPG 시설 철거 없이 도시가스 연결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9월 22일 E사는 LPG 공급을 차단하고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시 주요 인허가 종합 처리·안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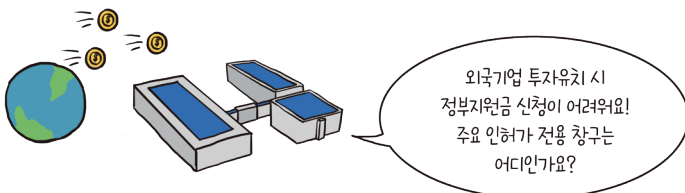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F사는 첨단산업단지에 제조연구혁신센터를 증설하려 합니다.
- 하지만 외국기업에게 국내 투자를 유치할 때 ① 정부지원금 신청 및 심의 절차가 어렵고 ② 주요 인허가 건을 종합적으로 처리·안내하는 전용 창구가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실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허가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의견이 상충할 수 있는데 투자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이 인허가 관련 잠재적인 리스크를 검토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 이에 F사는 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② 외국 본사 담당자가 동행하는 경우 직접 허가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안내하는 전용 창구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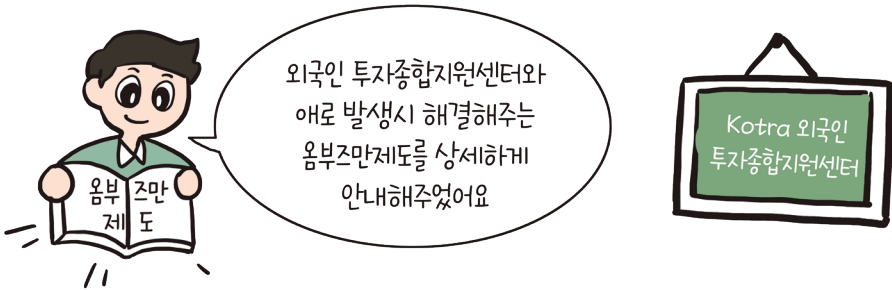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1월 7일 산업부에 해당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 소관과에 F사와 현금지원 관련 상황을 공유하였고, 12월 현금지원 평가위원회에서 F사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F사에 KOTRA가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전용 상담창구인 외국인 투자 종합지원 센터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제도 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 :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용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공장 증설 시 재활용 유형 조정 허가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G사는 산화아연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22년 2월 해당 지역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3월 3일 기존에 운영하던 1공장과 동일한 R-3-2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적합 통보를 받아 7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 환경청은 2공장이 1공장과 생산제품은 동일하나, 업종분류번호가 달라 R-4-7유형 또는 R-3-3유형으로 허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 *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 * R-4-7: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문제상황 및 이슈

- G사는 R-4-7유형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컨설팅 비용 부담이 있으며, R-3-3유형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납품처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 기업활동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 또한 G사는 '22년 3월에 이미 적합하다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 9월에 재활용 유형을 전환하도록 재통보한 것이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23년 11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므로 R-3-2유형의 허가가 어려우면 수요기업에 가능한 한 빨리 납품할 수 있도록 R-3-3유형으로라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에 '23년 10월 24일 해당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10월 25일 G사 제2공장 현장과 10월 26일 해당 지역 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 환경청은 G사의 우려와 달리 R-3-3유형으로 허가해도 현재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R-3-2유형보다 다양한 분야에 납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어 R-3-3유형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G사는 12월 1일 R-3-3유형으로 재활용 유형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업종배치계획 신속 변경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기업인 H사는 산업단지 부지 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H사의 제품을 적시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및 공사기간 등 공장 신축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H사 공장이 위치할 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에는 음극재, 양극재, 전구체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업종배치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업종배치계획 변경이 승인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 이에 H사는 업종배치계획 변경과 더불어 변경 승인을 3개월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H사가 '23년 9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 소관과와 국토부 산업입지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해당 산업단지의 업종코드를 변경하려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공공폐수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 조건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산업부와는 전력공급을, 환경부와는 용수공급과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 조건부 승인을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11월 8일 N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후 '24년 2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승인하여 3월 8일 국토부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서면심의를 통해 4월 16일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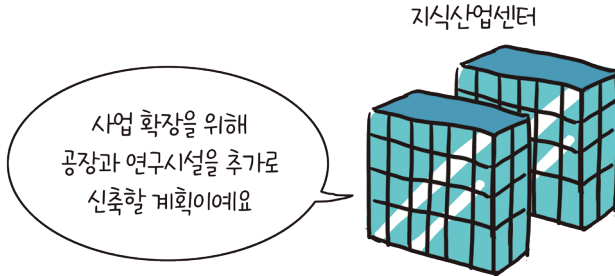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와
회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승인하여
변경 고시를 완료했어요

산업단지 내 공장·연구시설 신축 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산업단지에서 복합소재를 개발·제조하는 I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과 연구시설을 추가로 신축하기로 하고 허가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I사가 약 1,400m² 규모의 공장 착공을 준비하던 중 허가관청에서는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고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장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의무 수립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①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사업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 ②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 ③ 관련 자료 확보 및 보완에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I사는 산업부에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면적 1,000m²이상인 공장
건설 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2월 16일 산업부에 해당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LH, 과기부, 허가관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단서에서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m² 이상의 공장 신축 건만 계획 수립 의무를 지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 I사와 실무 논의한 후 '24년 2월 23일 산업부와 허가 관청은 일반적인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맞지만, 해당 부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장 면적이 2,000m² 미만이므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여 3월 26일 I사는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LH) 신청부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된 부지임
- (과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특례조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됨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산업부) 해당 부지는 ①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② 공장 면적이 2,000m² 미만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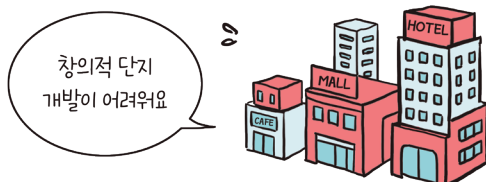
산업단지에서는 공장면적이
2,000m²미만 이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가 없어요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다용도 복합시설 기준 신설

◆ 기업애로 발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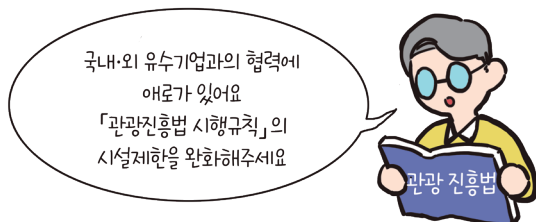
- 도시개발사업자인 J사는 토탈 웰니스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은 단일 용도의 시설기준만 정하고 있어 융·복합 관광 트렌드에 맞는 창의적인 단지를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탈 웰니스 관광단지 개발 추진중>



◆ 문제상황 및 이슈

- 미디어산업, 복합시설 등 개발 관련 기준이 현재 법령상 분명하지 않아 엔터테인먼트·숙박·쇼핑 등 세계적 수준의 one-stop 관광시설 개발에 대한 국내·외 우수기업과의 협력에 애로가 있습니다.
- 이에 J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관광산업지구' 와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23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해당 지자체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디어산업 관련 시설을 '기타시설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정확한 해석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도 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기재부에서 6월에 '정부부처 합동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 개정을 통한 복합시설지구 신설과 ②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허가 사례집 제작·배포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사례집이 배포되면 허가기관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6월 17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복합시설지구 신설 및 관광단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 사례 안내 내용이 담겼고 후속조치에 따라 12월 문체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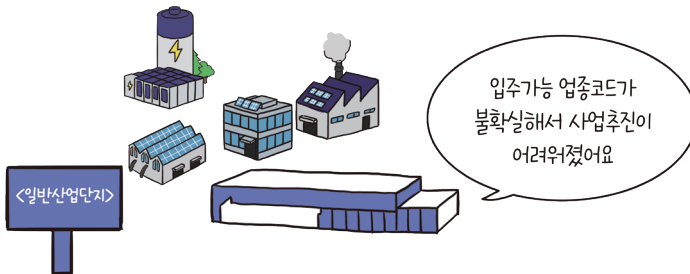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복합시설지구 신설 및
관광단지 설치 가능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사례를 배포했어요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K사는 일반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투자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코드가 불확실하여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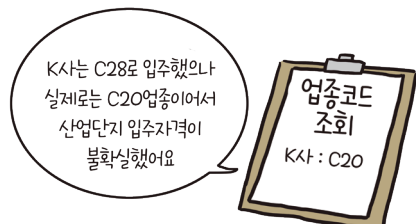


◆ 문제상황 및 이슈

- K사는 일반산업단지에 업종코드 C28(축전지 제조업)로 입주하였으나,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배터리 소재를 제조하는 업종코드는 C20(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20(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현행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C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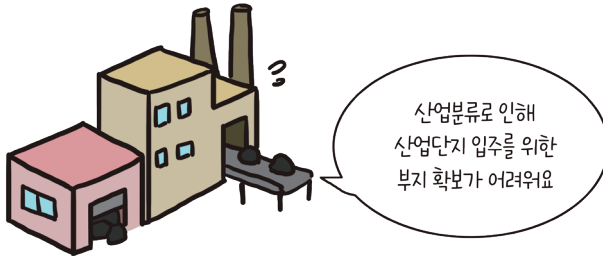
- '24년 6월 27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되었고, 7월 25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였습니다.
- C20(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현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선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운영하는 L사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추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재자원화산업이 속한 E38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 입주업종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재자원화의 생산과정을 보면 산업의 본질상 제조 활동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핵심광물 재자원화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로 E38(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로 분류되어 있어 제조업(공장)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 이에 L사는 재자원화산업 관련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38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
입주업종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개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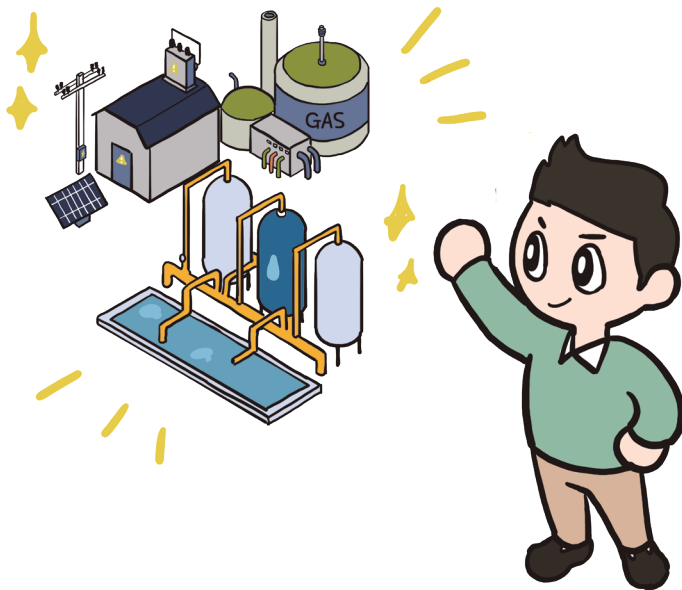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1월 1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산업부 소관과, 한국광해광업공단, 통계청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지정을 위한 실무를 논의 하였습니다.
-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5년마다 개정하는데 '24년 1월에 이미 개정이 완료되어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산업의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업특수분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기존 E분류(폐기물)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핵심광물 생산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존 분류체계와 구분해 병용할 수 있는 '특수분류체계' 도입을 합의하였습니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분류체계 개발에는 약 5~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25년 중 확정 고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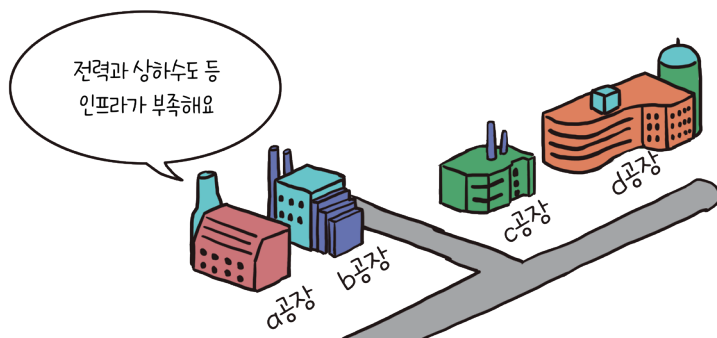
인프라



경제자유구역 내 전력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속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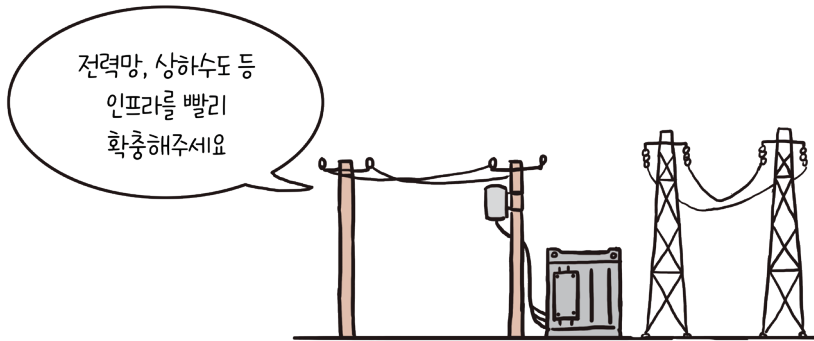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 기업인 A사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 공장 a,b,c,d를 순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사는 공장의 시운전 시점에 전력과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준공되는 a,b 공장의 경우 해당 구역의 변전소 준공이 지연되면서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렵거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하수 기반공사 완공시점이 공장 시운전보다 늦어져 임시 상하수 관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① a공장의 경우 '23년 10월에 20MW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24년 2월에 가능하고 '24년 9월에 상하수도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3개월 늦은 '24년 12월에 가능하며
- ② b공장의 경우 시운전이 예정된 '25년 1월에 15M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공장 증설 예정부지에 전력망,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가능한 한 빨리 확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력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빨리
확충해주세요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2월 28일 산업부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전력, A사와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 간담회 결과, a공장에 대해 전력공급의 경우 '23년 10월 주변 다른 변전소를 통해 20MW 임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과 전력사용계약을 협의했고, 상하수도의 경우 '24년 9월까지 조기 구축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 또한 b공장에 대해 '23년 8월 28일 b공장의 전기 사용을 신청하면서 한국전력과 '24년 3월 6일 타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사용하도록 조건부 전력공급에 합의한 후 '24년 7월 22일 전력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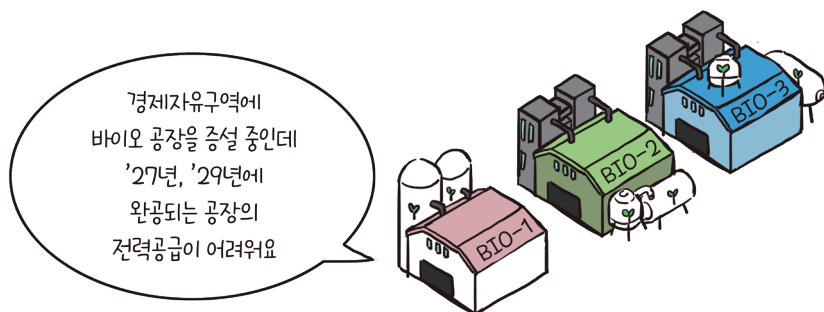


산업부는 한국전력,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하여 전력 및 상하수도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어요

경제자유구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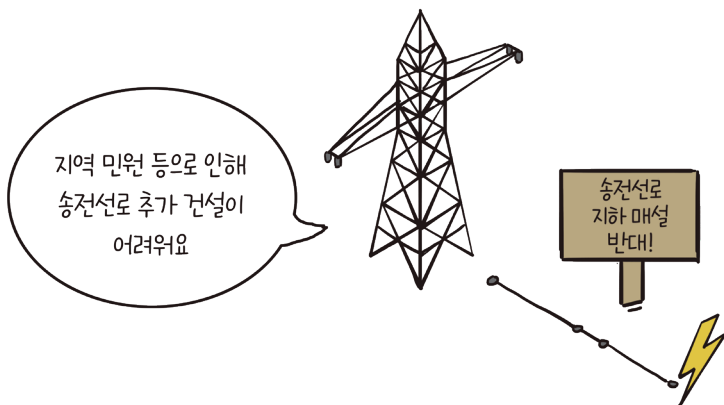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 기업인 B사 역시 A사와 동일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 공장 1,2,3을 순차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 B사의 1공장은 '25년 준공 예정으로 1공장의 전력공급 계약은 완료된 상황이지만 '27년 완공하는 2공장과 '29년 완공하는 3공장은 적기에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B사는 한국전력에 '23년 2월 24일 1공장의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4월 27일 2,3공장의 수전 예정을 통지하자 이에 한국전력은 6월 13일 1공장 전기 사용을 허가하였지만, 지자체에서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생활전자파 및 지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등 우려 민원 등으로 변전소 준공이 어려워 2,3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변전소 준공이 추가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과 민관 합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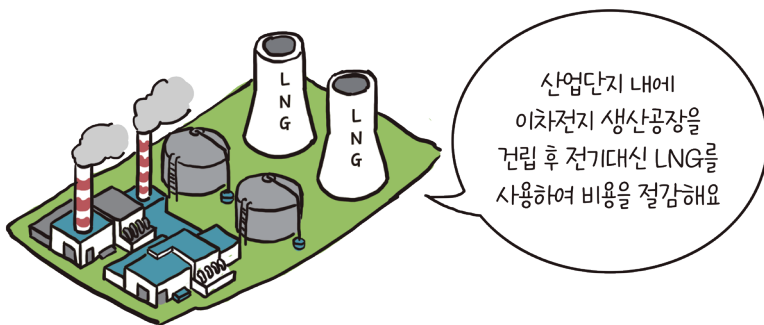
- 산업부는 해당 구역의 변전소 준공 지연으로 B사에도 동일하게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한국전력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전력 공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산업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지반 침하 및 전자파 발생 우려가 낮은 신도시 우회노선을 대안으로 마련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3년 6월 27일 지자체는 해당 특화단지를 조건부로 지정하고, 9월 인허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11월 5일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추가적인 공사 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송전선로 사업 인허가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신축공장 가동 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C사는 산업단지 내에 이차전지 생산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5년 이후부터는 C사의 전기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 대신 LNG를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지역기업들에는 '28년 이후 LNG가 공급될 예정으로 C사가 공장 가동 시점부터 LNG를 사용하려면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C사는 산업부에 공장 준공 전에 LNG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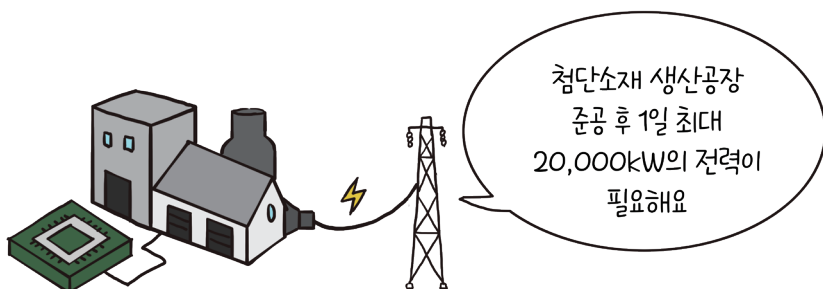
- LNG 가스 공급 담당과인 가스산업과가 해당 시·도에 문의한 결과 “C사 생산공장에 대한 가스 공급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산업부는 '23년 3월 14일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에게 파이프라인 조기 설치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는 해당 군청에 도로관리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군청은 C사가 제출한 경관심의 서류를 바탕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1일 도로심의와 6월 5일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6월 30일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는 LNG 공급 파이프라인 착공 준비를 완료하였고 9월 11일 C사의 공장 착공식 이후 11월 2주 파이프라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순 완공 되었습니다.
- C사는 LNG 공급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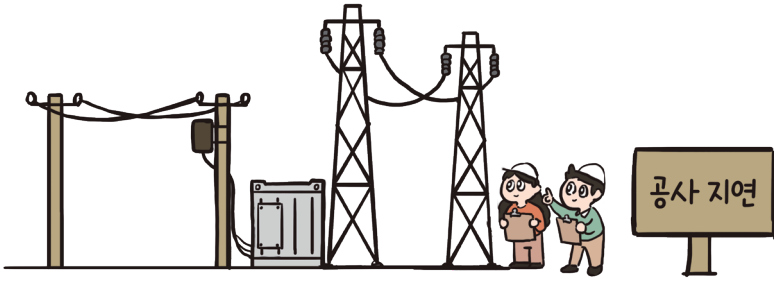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 기업인 D사는 기초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테크노 산업단지에 첨단 소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첨단소재 생산공장은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일 최대 20,000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D사는 한국전력에 공장 준공 시점인 '25년 3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변전소는 현재 건설 중으로 변전소 준공이 완료되는 '26년 이전까지는 인근 변전소에서 임시로 20,000k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도로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테크노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2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준공 시점에 전력공급이 어려움을 통보받은 D사는 4월 9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 한국전력 고객지원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전력이 기간별로 최대 가능한 전력 공급량을 확인하였고 D사도 이러한 공급가능량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협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협의 결과 '25년 3월부터 8월까지 1일 4,000k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시제품을 생산하고 '25년 8월부터 '26년 6월까지 1일 10,000k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제품을 양산하며 해당 지역의 변전소가 준공되는 '26년 6월 이후부터는 원래 계획했던 1일 20,000kW의 전력을 공급하여 D사의 공장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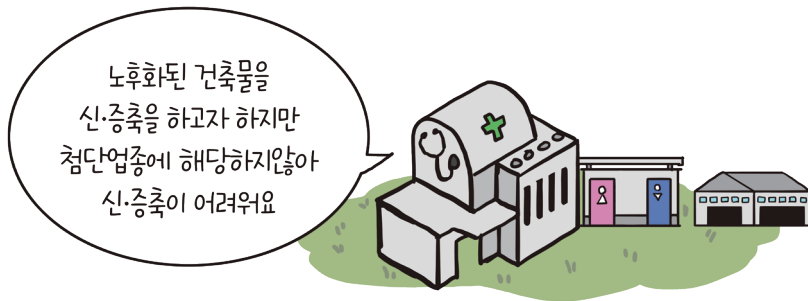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등 부대시설 신·증축 허가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의료기기 제조 기업인 A사는 현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의 공장부지 내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만 건축할 수 있는데 A사의 제품은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가 해당 시청 협의를 진행한 결과 “A사의 제조품이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장이 아닌 부대시설은 신·증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공장부지 내에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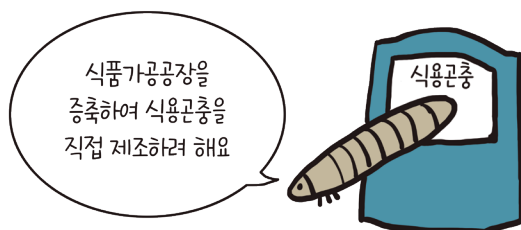
- '24년 4월 3일 A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확인한 결과 A사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에도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만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 첨단업종 분류 코드를 추가로 등록한 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9월 26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A사는 노후화된 화장실, 휴게공간, 창고 등 기존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후 부대시설을 신·증축하고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부대시설 면적 등록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식용곤충 등 가공공장 증축 허가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농업회사법인인 B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식용곤충을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제품을 100% 위탁 생산하던 B사는 식품가공공장을 건축하여 직접 제조하려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가공공장 증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식용곤충식품 가공업의 경우, 인근 농가로의 확산 등으로 주변 농지잠식이 우려되어 지자체가 선뜻 허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미래 식품으로 유망한 식용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가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지자체의 허가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5일 B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4~5월에 해당 지자체와 3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농림부 및 관할 지자체와 산업부는 곤충사육 및 가공업 허가로 인한 인근 농지의 잠식 우려 및 기존 농수산물 가공처리업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6월 5일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지만 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보존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공장 증축 허가에 합의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식품공장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주변 농지잠식 우려를 덜고 가공공장
증축 허가에 합의했어요



LNG 공급 배관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신속 승인

◆ 기업애로 발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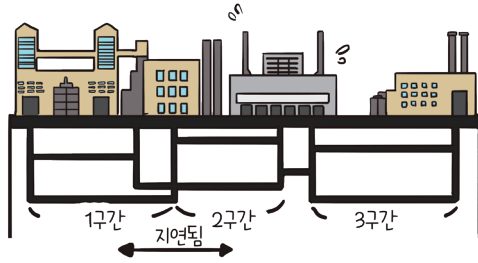
- 집단에너지사업자인 C사는 한국가스공사와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으로 '25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하려는 LNG 공급 배관은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구간의 경우 민원 등의 반발에 부딪쳐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배관을 설치하는데 약 1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바로 착수하지 못하면 집단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하루 약 5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예상됩니다.
-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목적외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다른 허가는 완료되었지만 1, 2구간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C사는 산업부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2구간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요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8월 1일 C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8월 7일 한국가스공사와 LNG 배관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와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수시설 조성 지원, 추가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논의, 지역업체를 활용한 공사 계약 등 다양한 방향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 그 결과 9월 19일 시청은 1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였고, '25년 1월 9일 2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속한 인허가 및 착공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시청과의 협의로
허가기준을 상세히 따져본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요

공장 증설 시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임시출입로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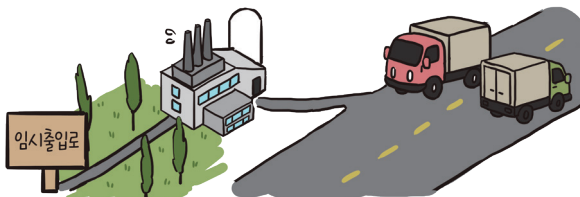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초고속변압기를 생산하는 D사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 기존 공장에 접한 주 출입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주 출입로는 큰 각종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이 항상 입출고하여 사고의 위험, 공사용 물자 출입을 위한 적재와 이동 등의 어려움이 있어 1년간 공사용 임시출입로를 확보하려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도시계획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공원녹지법」에 따라 완충녹지에는 개별공장별로 출입로를 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D사가 원하는 임시출입로 경로는 완충녹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1년 후 복원을 전제로 공사용 임시 출입로를 위한 녹지점용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고 11월 27~28일 산업부는 D사와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녹지에 대한 진입로 점용허가의 영구성 여부를 두고 각 담당 기관간의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25년 1월 7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청해 법령 해석 논의를 진행했고, 1월 23일 공사완료 후 완충녹지 복원을 전제로 임시출입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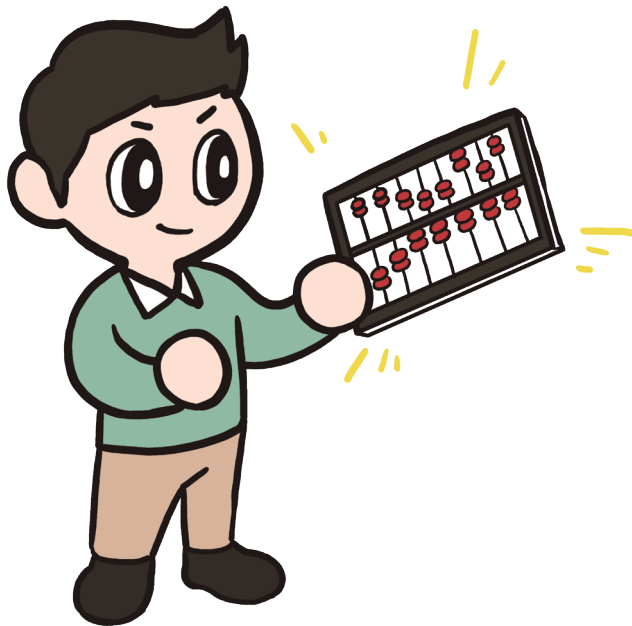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속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재정 · 세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가 시 대금 신속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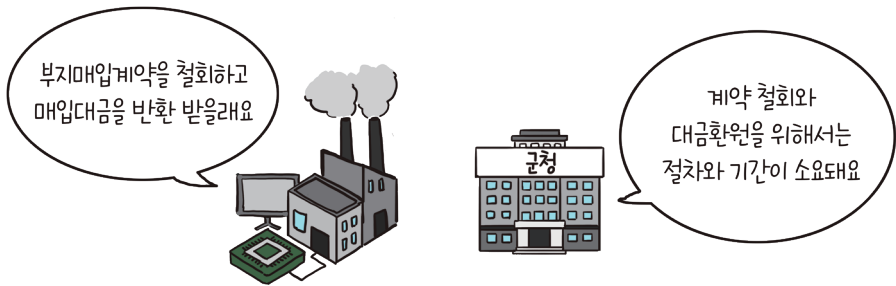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포토레지스트용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A사는 에너지 융합산업단지 내에 공장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20년 6월 군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2년 10월 대금을 완납하여 11월 소유권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11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에너지 융합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악취배출시설 업체가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기준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입주를 포기하고 군청에 부지매입계약 철회와 납부한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군청에서는 계약철회와 대금 환원을 위해서는 절차와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A사는 이미 사업추진단계에서 인건비, 건축설계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산업부에 매입 대금을 빨리 돌려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투자 애로사항 접수를 받은 산업부가 '23년 1월 12일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반환 금액 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약취방지법」 제3조 등에 근거해 빠른 환원을 건의하였고 대금 반환 약속을 확정함으로써 A사의 새로운 부지 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에 2월 2일 A사는 새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 25일 부지매입대금이 반환되면서 이전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약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약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약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약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약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약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약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이오의약품 공장 생산설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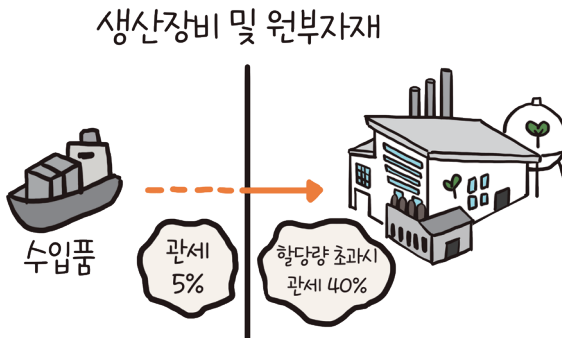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의약품 생산회사인 B사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B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장비와 원부자재의 수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를 희망하지만 바이오 분야 할당관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당시 바이오 분야 할당관세 품목은 한 개로 바이오의약품 전문생산산업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부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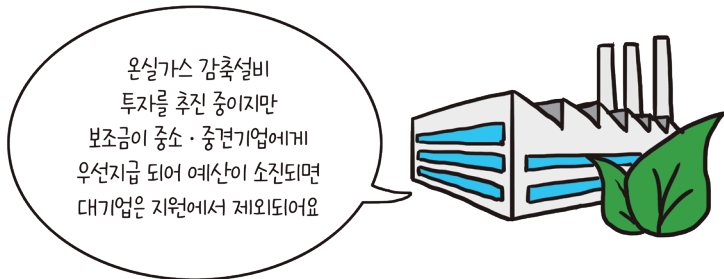
- '23년 2월 B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를 접수한 후 산업부는 2월 7일 기재부 범부처 규제혁신 TF로 과제를 송부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B사에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품목이 무엇인지를 묻고 할당관세 품목 지정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할 때 소관 업종과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수입국과의 FTA 협정을 통해 관세율이 모두 0%이므로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확대 및 대기업 별도 지원

◆ 기업애로 발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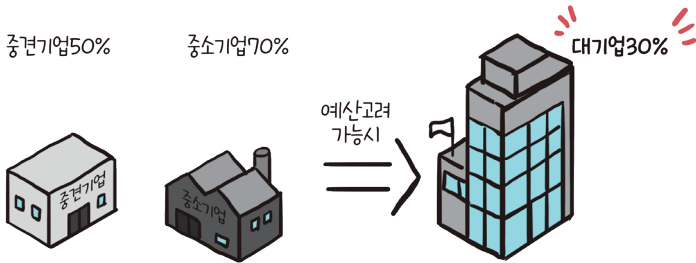
- 유통물류 회사인 C사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구축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지급되어 정부예산이 소진되면 대기업은 지원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매년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어 기업의 감축설비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23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할당 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예산 소진을 고려한 후 가능할 때만 공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율도 30%에 그칩니다.
- 그러므로 C사는 산업부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대기업 지원금액은 별도로 분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연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3월 C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3월 28일 통합 물류협회에 C사 요청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5월 4일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기후경제과와 협의하여 기업 규모별 예산이 아닌 사업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선정할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할당 대상 업체의 사업 수요를 감안해 앞으로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 5월 19일 C사에 환경부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고 C사는 다음 차수 사업신청 공고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온실가스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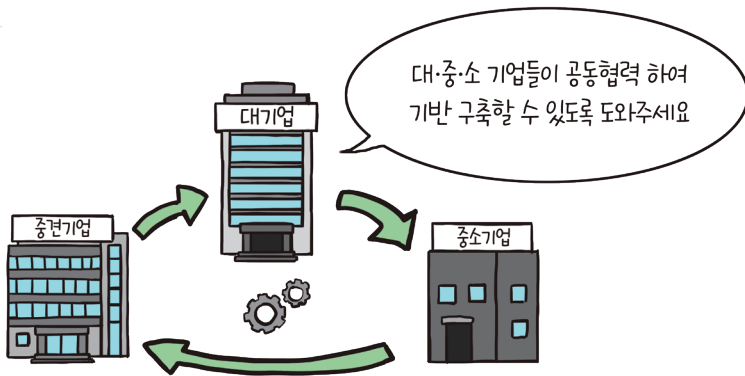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에너지 기술 제조 기업인 D사는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D사는 최고 수준의 제조 기반을 구축해왔지만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영국, 미국 등 관련 기술 선도 국가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난이도 높은 제조 기술을 대기업 주도로 설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는 대기업에 대한 장비·설비 투자 지원에 소극적입니다.
-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D사는 산업부에 대·중·소 기업들이 공동협력하여 제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월 D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3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수요 대응 원천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 8월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였고 10월 기재부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안 최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12월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24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어 D사는 공동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R&D 사업 기획 및 지원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항공기 개발 기업인 E사는 세계 민항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참여 시 막대한 규모의 산업 파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차세대 단일통로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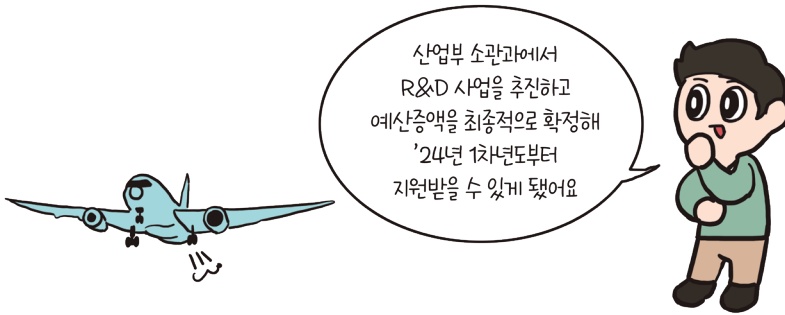
◆ 문제상황 및 이슈

- 항공기 관련 사업은 국가 기반산업으로 항공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에 E사는 산업부에 차세대 항공관련 핵심기술을 위해 R&D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는 '21년 8월 E사와 협력 강화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현지 실사를 통해 추가로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산업부 소관과에서는 '23년 항공분야 R&D 사업을 추진하였고 12월 국회 예산 증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E사는 '24년부터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기업부담 매칭비용 기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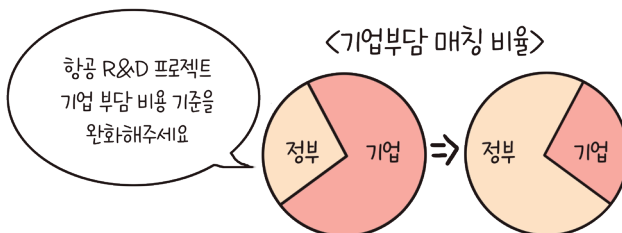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항공기 개발 기업인 F사는 기체 개발과 생산라인 구축에 '24년 8,40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항공·제조 산업의 제조, 인프라, 서비스 분야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F사는 해외 유수의 항공기 개발사와 협력하여 지상에서 전기추진수직이착륙 시스템(eVTO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조 원의 개발비가 소요되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F사는 해당 분야와 연계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R&D 프로젝트에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비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0월 F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요청한 이후 산업부 소관과는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와 적용 시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산업기술개발과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기업분담 비율은 기재부·과기부 소관이므로 산업부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분담 비용 중 현물 비중을 높이고 현금 비중을 낮추는 등 기업의 적극적 R&D 참여를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 결과 12월 26일 「산업부 R&D 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담금 현물, 현금 비율을 아래와 같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대기업·공기업(60% ↑ → 15% ↑), 중견기업(50% ↑ → 13% ↑), 중소기업(40% ↑ → 10% ↑)





부록



1장.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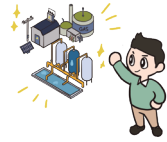
01.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기준 완화	8
02. 전기신사업자 등록 이후 한국전력 통한 전력 부족분 직접 공급 매개	10
03. 소규모 해체 공사인 경우 신고로 인허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12
04. SMP 상한제 조기 종료	14
05. 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교육환경평가 예외 또는 준공까지 유예	16
06. 산업입지심의회 체크리스트 중 입지기준 완화 또는 면제	18
07. 폐수 발생 전량 위탁 처리 시 산업단지 입주 제한 해제	20
08. 사업장 내 수소충전기 설치 허용 법 개정 및 안전관리규정 수립	22
09. 수소 충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수소 모빌리티 정의 추가	24
10. 규제샌드박스 통한 셀프스토리지 허용	26
11.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28
1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다수 사업자에게 REC 분배 허용	30
13. 산업시설용지의 지구단위 규제 완화	32
14. 자원순환시설 증설 투자 시 사업부지 확장 허용	34
15.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량 확대 허용	36
16. PPA계약 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 구현	38

2장. 신속 행정



01.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시 정보 공유방법 및 접근성 개선	42
02. 신축공장 진입로의 권리의무 승계 지연 대책 마련	44
03.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등급 시설 이용	46
04. 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 확대 운영	48
05. 도시가스 연료 전환을 위한 LPG 공급시설 철거 요청	50
06.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시 주요 인허가 종합 처리·안내 지원	52
07. 폐기물 재활용공장 증설 시 재활용 유형 조정 허가	54
08. 산업단지 내 업종배치계획 신속 변경	56
09. 산업단지 내 공장·연구시설 신축 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58
10.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다용도 복합시설 기준 신설	60
11.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업종 코드 명확화	62
12. 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선	64

3장. 인프라



01. 경제자유구역 내 전력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속 확충	68
02. 경제자유구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 체계 마련	70
03. 신축공장 가동 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	72
04.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74

4장. 인허가



01.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등 부대시설 신·증축 허가	78
02. 농업진흥구역 내 식용곤충 등 가공공장 증축 허가	80
03. LNG 공급 배관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신속 승인	82
04. 공장 증설 시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임시출입로 허가	84

5장. 재정 · 세제



01.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가 시 대금 신속 반환	88
02. 바이오의약품 공장 생산설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90
03.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확대 및 대기업 별도 지원	92
04. 에너지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 지원	94
05.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R&D 사업 기획 및 지원	96
06.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기업부담 매칭비용 기준 완화	98



기업 투자 애로사항 접수 방법 및 해결 과정 안내

◆ 투자 애로사항 건의 작성

- 양식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수집된 기업 정보 및 투자 관련 사항은 문제 해결에만 이용되며 이외에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투자와 관련없는 단순 예산 등 기업 지원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 건의서(양식)	
기업명	· 기업명 · 실무 담당자 · 장소 (불필요시 미작성)
투자 금액	· 약 00억 원 (부지 매입비, 공사비, 시설비 등 관련된 금액을 산정)
건의 사항	· 애로사항의 핵심을 요약하여 기입 ·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설명
관계 기관	· 000시 000과 00팀 (담당부처/기관이 파악된 경우 작성)
주요 경과	· 현재까지의 규제 담당부처/기관 협의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서술

◆ 전국 상공회의소 접수처 안내

-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속 및 부서	연락처	메일주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02-6050-3721	jhwayong@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기업규제개선팀	051-990-7042	jiman@korcham.net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053-222-3066	syjang0719@korcham.net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863	soompk@incham.net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062-350-5862	aipjh@korcham.net
대전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042-480-3022	apatheia@korcham.net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052-228-3072	research@ucci.or.kr

◆ 산업부 담당자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애로사항 해소

- 접수된 투자 애로사항은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련 기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민신문고 등 일반적인 민원 처리와는 달리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부, 결과 회신

- 신청기업 및 접수처 등에 진행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및 애로 해소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E컨슈머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전화	1577-0900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내용의 무단 복제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 사전에 발행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